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용 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 준수사항 포함》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874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제221987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공사작업자 및 감리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 준수사항 포함(안 제62조제1항)	2

I.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제221987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종양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7. 9.

다. 회 부 일 : 2026. 7.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자, 감리원 등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3. 검토의견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공사작업자 및 감리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 준수사항 포함(안 제62조제1항)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공사작업자 및 감리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 등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u>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u>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 -----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u> <u>는</u> ----- ----- ----- ----- ----- ----- ----- -----
<신 설>	1. <u>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u>
<신 설>	2. <u>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다)</u>
<신 설>	3. <u>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u>

현행	개정안
<신설>	<u>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u>
<신설>	4. <u>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u>
<신설>	5. <u>안전관리비 집행계획</u>
<신설>	6. <u>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u>
<신설>	7. <u>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u>
<신설>	8. <u>건설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준수 사항(공사작업자 및 감리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u>
<신설>	9. <u>그 밖에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 ⑱ (생략)	② ~ ⑱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62조¹⁾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건설사업자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시공자”라 함)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 제99조2)에서는 안전관리계획에 건설공사의 개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향타 및 향발기
 - 다. 타워크레인
-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및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안 제6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는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관리계획 포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고,

안 제62조제1항제8호에서는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준수사항을 안전관리계획 포함 사항으로 추가하면서, 근로자 준수사항에 ‘공사 작업자 및 감리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 및 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포함 사항 비교】

현행법 시행령	개 정 안	비 고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현행 시행령과 동일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	현행 시행령과 동일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시행령	개 정 안	비 고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한다)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3.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현행 시행령과 동일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현행 시행령과 동일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현행 시행령과 동일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현행 시행령과 동일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현행 시행령과 동일
	8.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준수 사항(공사작업자 및 감리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안전관리계획 포함 사항 추가
	9. 그 밖에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각종 소음과 중장비가 오가는 건설공사현장에서의 휴대용 전화 사용은 시각적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주변 위험 신호에 대한 인지력을 저하시켜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작업 중에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 바 있고,³⁾ 업계에서도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자제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인명·재산 등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공사작업자 및 감리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 준수사항에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리원은 시공자의 설계도서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시공 여부 및 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통해 감리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3) “서울시, 현장 근로자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22.2.10.
“경남도,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마련”, 경상남도 보도자료, 2024.4.29.

4) “안전 위해 일할 땐 휴대폰 끄시다”, 대한전문건설신문, 2026.6.12.

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이 부적정한 것으로 해석되어 시공자가 제재⁶⁾를 받게 될 우려가 있고, 근로자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규정⁷⁾하는 것이

6)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3.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7)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근로자의 이동 및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877,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2026.7.9.)이 발의되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877,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2026.7.9.)

현행	개정안
<신설>	제40조의2(위험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근로자는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⑤ (생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3. ----- -----제40조의2, 제108조제5항----- ----- -----

체계적으로 적절하며, 감리원은 시공자를 감독하는 위치로서 시공자가 감리원의 휴대전화 사용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는 안전관리계획은 근로자 개인 행위의 직접 규율이 아니라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어,

안 제62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안 제62조제1항제6호의 안전교육⁸⁾에 ‘공사작업자의 휴대용 전화 사용에 관한 교육 및 주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시 시야 분산 및

현 행	개 정 안
4. ~ 18. (생 략) ⑦ (생 략)	4. ~ 18.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8) 개정안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8.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준수사항(공사작업자 및 감리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주의력 저하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례⁹⁾도 있는바, 건설업 재해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안과 같이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용 전화 사용 관련 준수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9)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 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